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5. 11 선고 2022가단212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조세형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4. 27.
판 결 선 고 2022. 5.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1. 6. 25.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6. 28. 접수 제289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2020. 1. 31. C과 사이에, C이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D 주식회사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2) C은 2020. 1. 31. D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21. 9. 16.부터 이자 등을 연체하였고, 이에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1. 12. 29. 원고로부터 보험금 7,081,341원을 지급받았다.
- (3) 한편, 원고의 위와 같은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C에게 가지는 구상금 채권액은 2022. 2. 28. 현재 7,160,64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C의 처분행위

C은 2021. 6. 25.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28. 접수 제289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주시,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권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이 2020. 1. 31. 원고와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후 C의 이자 등 미지급으로 보험사고 발생하자 원고가 2021. 12. 29. 보험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재산 전부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탁자인 제3자에게 신탁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에게는 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신탁법 제8조에서 정한 사해신탁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23.자 2009마1176 결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은 자신의 유일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한편,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점에 관하여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고 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28. 접수 제289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민영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주시 동

[도로명주소]충주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충주시 대 21967.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4.6109㎡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21967.2분의 51.7873. 팔.

